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024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024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19가합759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유병일, 전수려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기

변론 종결 2022. 11. 9.

판결 선고 2022. 12. 14.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19가합759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332,420,0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2,420,0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 4. 19. 접수 제3499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강조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기존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었던 실질적인 법률행위는 2018. 11. 27.자 이 사건 교환계약이지,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2019. 3. 13.자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B의 채무초과상태는 2018. 11. 27.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피고의 G리 토지 및 현금 차액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B은 G리 토지를 새로운 책임재산으로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만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피고는 G리 토지에 관하여는 B이 아닌 K과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B에게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그 잔금 중 일부는 K에 피고의 L 건물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교환계약보다 B의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별도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B의 신용보증 약정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 1) 피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채무자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기간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갑 제20호증의3 중 B의 연대보증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판단 갑 제1, 2, 3,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각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갑 제20호증의 1, 2, 3)의 연대보증인란 '(인)' 부분에 기재된 서명들 중에서 갑 제20호증의3에 기재된 서명만 나머지 갑 제20호증의 1, 2에 기재된 각 서명과 다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는 B의 서명 외에도 B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가 B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필적들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모두 동일하다. 여기에다가, B은 C의 실질적 경영자이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추인되고, B이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갑 제20호증의3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 중 B의 연대보증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18. 2. 23.까지에서 2019. 2. 22.까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의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이재찬

판사김영진

별지